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63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강화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2. 7.

다. 회 부 일 : 2025. 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자격을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함)을 졸업하여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학사 학위를 받을 예정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정하고 있음. 수의사는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한 이래로 그동안 우리 축산업의 발전, 국민 보건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의 확산 및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맞춰 수의사 국가시험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의 국가시험의 경우와 같이 그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보다 강화함으로써 수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통해 양질의 수의사 인력이 양성·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전문 자격제도 간 균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수의사 인력을 배출하고 수의사 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

Ⅲ. 검토의견

1.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강화

현행법은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 포함)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거나 받을 사람 등에 대하여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응시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졸업 대상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¹⁾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9조(응시자격) ①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응시자격) ① ----- ----- ----- ----- -----.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졸업하여 수의학사 학위를 받을 사람을 포함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수의학을-----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 교육부로부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으로 인정을 받아 수의과대학을 평가·인증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이 모두 1회 이상 인증 절차를 완료한 바 있음.²⁾

-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10개 대학(서울대, 건국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상국립대, 경북대, 제주대)

그러나 현재 인정기관으로부터의 평가·인증은 수의과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대학별 교육환경의 편차가 발생하고 교육과정의 표준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³⁾

이에 개정안은 엄격한 인증 과정을 거친 수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하여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양질의 수의사를 배출하고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개정안은 동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의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엄격한 인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⁴⁾

중 경북대를 제외한 9개 대학이 2주기 인증 절차를 완료하고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경북대는 1주기 인증의 기간만료(2025년 8월)에 따라 금년에 2주기 인증을 받을 예정임.

- 3) 데일리벳, “수의사회·학계·정부, 수의학교육 인증-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 법제화 ‘한목소리’”, 2025. 1. 23., URL: <https://www.dailyvet.co.kr/news/college/234831>
 헬스조선, “수의과대학별 등록금 최대 2.4배 차이…‘교육·수련 상향평준화 필요’”, 2024. 2. 23., URL: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4022802704
- 4) 유사입법례로 의료인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자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의 사례가 있음.

< 유사입법례 >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분야	인정기관	설립	인증대상
의사	한국학교육평가원	'04.2.27.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치과의사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08.1.11.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사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04.10.7.	한의학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간호사	한국간호교육평가원	'04.2.19.	간호대학

다만,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현행법 제9조제1항제2호⁵⁾는 같은 항 제1호 전단을 인용하고 있는데, 안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이 개정하는 경우 현행법 제9조제1항제2호는 ‘국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외국’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현행 제1호 전단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학생의 입학 당시 인증을 획득했던 수의과대학이 해당 학생의 졸업 당시에는 인증에서 탈락한 경우, 해당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⁶⁾

- 5) 「수의사법」 제9조(응시자격) ①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졸업하여 수의학사 학위를 받을 사람을 포함한다.
 2. 외국에서 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학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그 국가의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 6) 유사입법례로 동물보건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학생의 신뢰 보호를 위해 입학 당시 인증받은 양성기관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구체 조항을 두고 있는 「수의사법」의 사례가 있음.

< 유사입법례 >

「수의사법」 제16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 ①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셋째, 「고등교육법」과 연계되어 인증 의무, 인증 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된 의과대학 등과 달리,⁷⁾

개정안의 경우 수의사법을 통해서만 수의과대학의 인증 의무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교가 인증 획득을 게을리 할 경우 제재할 행정 수단이 부재하므로,⁸⁾

7)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 ③ (생략)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8)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의료과정 운영학교의 평가·인증 절차 등 규정하고 있으며, 의학 관련 대학의 경우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 정지 가능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절차) ①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하려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의료과정운영학교”라 한다)로서 인증을 받은 학교는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 또는 제3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과정운영학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재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전단에 따라 재신청한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방법·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각 호 생략>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

「고등교육법」을 함께 개정하여 수의과대학의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⁹⁾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외국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국내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점, 입학 당시 인증을 획득한 수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신뢰보호를 위해 졸업 당시 소속 학교가 인증을 불획득한 상태이더라도 자격시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¹⁰⁾

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라.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대통령령 제27228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전공 학과등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해당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전공 학과등 또는 전문대학원 폐지

9) 특히, 이와 관련하여 2019년 8월 27에 도입된 ‘동물보건사’ 제도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즉, 「동물보호법」 제16조의4제1항은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도 1차 평가인증 결과 인증 대상 양성기관은 전년대비 10개소가 감소한 8개소에 불과하였으며, 이에 불인증 판정을 받은 기존 인증 대학(7개소) 및 재인증 미신청 기관(3개소)은 총 10개소, 약 300명의 졸업생 시험응시가 어려워지게 됨.

이에 입학 당시 인증받은 양성기관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구제 조항(현행법 제16조의2제2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3378호)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음.

개정안의 경우에도 본문의 ‘둘째’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입학 당시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입학 당시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기관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여전히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한수의사회는 수의학 교육 인증이 의무화되지 않아 대학별 교육환경의 편차가 커질 우려가 있으며, 대학의 경우 교육환경을 개선할 동기가 없으므로 수의사 양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 부재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교육부는 현재 수의사 국가시험을 통해 질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수의학 교육 인증이 의무화되는 경우 대학의 부담이 우려되며, 입학 당시 인증을 받았으나 졸업 당시 소속학교가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본인의 과오가 아닌 사유로 시험응시 자격을 박탈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4

-
- 10)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증 도입 시 인증 기준이 반려동물 임상 분야에 집중될 경우 수의과 대학의 제한된 자원이 반려동물 임상 분야에 집중투자되어 농장동물 임상, 공중보건, 연구 분야 교육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바, 인증 도입 전 균형있는 교육과정 마련에 대한 검토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제시함.

참고1

전국 수의과 대학 및 면허자 현황

□ 전국 수의과대학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18	'19	'20	'21	'22	'23
수의과대학 개소 수	10	10	10	10	10	10
졸업생 수	541	534	555	530	585	530

□ 수의사 현황

(단위 : 명, %)

연도	구분	총면허자	현업종사	비수의 업종	비근로자	재외거주	기타·미신고 (사망포함)
'20	인원	20,649	13,303	494	2,618	526	3,708
	비율	100	64.4	2.4	12.7	2.5	18.0
'21	인원	21,179	13,070	486	2,694	525	4,404
	비율	100	61.3	2.4	12.7	2.6	18.0
'22	인원	21,755	13,277	492	2,875	515	4,596
	비율	100	61	2.3	13.2	2.4	21.1
'23	인원	22,292	14,123	734	2,666	541	4,228
	비율	100	63.4	3.3	12.0	2.4	19.0
'24	인원	22,806	14,234	709	2,707	545	4,611
	비율	100	62.4	3.1	11.9	2.4	20.2